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 시 정 요 구

제 목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공주시

훈 계 대상 자 ① 충청남도 공주시 ○○○○과 지방○○○○ ○○○

② 충청남도 공주시 ○○○○과 지방○○○○○ ○○○
(전 공주시 ○○○○과)

내 용

지방○○○○ ○○○은 2014. 3. 6.부터 2014. 12. 31.까지, 지방○○○○○
○○○은 2013. 1. 14.부터 2015. 6. 30.까지 공주시 ○○○○과에서 “○○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의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및 실시설계서(안)이 작성되면 유역(지방)환경청에 설계서의 기술검토결과를 받아 반영하고, 총사업비 감액,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규모 및 사업물량의 변경 등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역(지방)환경청의 설계서에 대한 기술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조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주시 ○○과(현 ○○○○과)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하천공간을 계획하고 홍수에 안전하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을 목적으로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L=16km)”¹⁾을 추진하였다.

공주시 ○○과는 2014. 3. 6. ○○○○○○청에 ‘○○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술검토 신청’을 하였고, ○○○○○○청은 2014. 4. 30. ‘공원화를 유도하는 다목적 잔디광장, 계단블록 및 실외화장실 계획 등을 삭제’하도록 기술검토결과를 공주시 ○○과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공주시 ○○과(현 ○○○○과)는 ○○○○○○청의 기술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기술검토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2014. 7. 24. 충청남도에

1) 총사업비 120억원(국비 60%, 시비 40%)

‘○○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2014. 9. 16.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9. 23. ‘잔디광장, 계단블록, 화장실계획을 삭제하고 잔디블록, 콘크리트 등 인위적인 포장을 지양’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결과’를 공주시 ○○과에 회신하였다.

그러나 공주시 ○○과(현 ○○○○과)는 ○○○○○○청의 ‘기술검토결과’와 충청남도의 ‘○○천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2015. 4. 13. (주)○○○○○(준공금액 6,636백만 원)과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약하여 2015. 4. 13. 착공하여 2017. 7. 28. 준공하였다.

결국 공주시 ○○○○과(구 ○○과)는 아래 [표1]과 같이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목적 잔디광장, 계단블록, 실외 화장실 및 교행차로 포장 등’을 설치하여 국고보조금 324백만 원(보조율 60%)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표1] ○○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적합 공사내역

구 분	공종명	공사금액(원)		
		계	국비(60%)	지방비(40%)
○○○○○○○청 기술검토결과 삭제의견 미반영 내용	다목적 잔디광장(16,200㎡)	406,548,183	243,928,910	162,619,273
	계단블록(720㎡)	76,878,938	46,127,363	30,751,575
	실외 화장실(이동식, 3개소)	50,778,591	30,467,155	20,311,437
	교행차로 포장(384㎡)	6,423,940	3,854,364	2,569,576
	합 계	540,629,652	324,377,792	216,251,861

※ 현재 “○○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예정(2017. 12월중)

따라서 지방○○○○ ○○○과 지방○○○○○ ○○○은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담당책임과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공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태하천복원사업 기술검토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미반영한 목적 외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정산 시 관련 절차에 따라 감액 등 적의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